제6편 위원회 6-1-1

# 교무위원회 규정

2003. 06. 27. 전면개정2021. 04. 01. 부분개정2009. 08. 01. 부분개정2021. 11. 01. 부분개정2012. 08. 01. 부분개정2022. 10. 01. 부분개정2016. 12. 20. 부분개정2023. 04. 01. 부분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79조 학칙 시행세칙 제65조에 의하여 교무행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효율적인 학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본 위원회는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라 칭하고 대전보건대학교 내에 둔다.

제3조(구성)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,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1.04.01., 2021.11.01., 2022.10.01., 2023.04.01.>
- 2.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둘 수 있다.<개정 2021.04.01.>
- 3.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유고 시업무를 대했한다.
- 4.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, 위원장이 소집한다.

**제5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6.12.20.>

- 1. 대학의 기본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
- 2.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3.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
- 가. 교육계획 수립과 평가
- 나.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
- 다. 수업, 성적, 시험, 진급, 학점(인정) 관리
- 라. 학생 실험실습(현장(임상)실습 포함)의 운영기구 및 시행 평가
- 4. 학사연구 계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
- 가. 학과 및 학생정원 조정
- 나. 입학 및 졸업(학생)에 관한 사항
- 다. 교내 주요행사에 관한 사항
- 5. 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
- 6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6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**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.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- ①(시행일)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,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,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